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동의의결제도 도입 〉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49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춘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2026. 2. 4.
3. 회 부 일: 2026.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3,370만 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임이 드러났음. 이로 인해 국민 다수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 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됨.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개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 대부분의 피해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소액에 그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

로 피해보상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그 유인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임. 결국 광범위한 피해는 존재하지만 실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동의의결제도 도입이 대두되고 있음.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및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제재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피해자는 수년이 소요되는 법적 공방 없이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법률적인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 16. (생략) ② ~ ⑤ (생략)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제6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에 관한 사항</u> 9.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0조(비밀유지 등) ----- -----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제64조의4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u> <u>제64조의3(동의의결) ①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개인정보</u>

현행	개정안
	<u>처리자(이하 이 조부터 제6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64조의5까지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의 자발적 해소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u> <u>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u> <u>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u> <u>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 <u>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u> <u>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u>

현행	개정안
<신설>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상태를 해소시키거나 정보주체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보호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64조의4(동의의결의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정보주체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

현행	개정안
	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6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가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⑤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를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호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를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를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의결절차,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에 대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u>제64조의5(동의의결의 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u> <u>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u> <u>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u> <u>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보호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를 적용한다.</u> <u>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제64조의6(이행강제금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결시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를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사례는 드문 상황임.

○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개인별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그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별도의 소송 제기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임.

○ 한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을 두고 있으나,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일방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불응으로 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고,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청구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¹⁾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의 자발적 해소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면, 보호위원회가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²⁾

□ 동의의결제도는 미국의 당사자주의적 분쟁해결시스템(Adversarial Dispute Resolution System)의 산물로서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단계에 이르기 전에 피심인과 경쟁당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련의 절차임.

1) 「통신사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구제: 집단소송제와 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5.11.)

※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2)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와 개정안의 비교

○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 합의사항³⁾에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이 포함됨에 따라 2011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된 이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4. 시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6. 시행),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7.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 7. 시행)에 확대 도입되었음.

□ 동의를결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음.⁴⁾

구분	공정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신청요건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의 자발적 해소 및 피해구제
개시요건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정보주체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동의를결 요건	①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②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①, ② 모두 충족 필요)	①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②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상태를 해소시키거나 정보주체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①, ② 모두 충족 필요)
동의를결 의견조회기간	30일 이상	30일 이상
이행강제금	1일당 200만원 이하	1일당 200만원 이하

3) (한미 FTA 협정문 제16.1.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집행 조치의 대상자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5. Each Party shall provide its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its national competition laws with the authority to resolve an administrative or civil enforcement action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subject of such an enforcement action.

4) 「공정거래법상 동의를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유진희·최지필, 고려법학 제64호, 2012.3.)

- 동의의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일방적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기업의 입장에서든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해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시정조치 등으로 담보할 수 없는 실질적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제한된 자원을 위법성이 중대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음.

- 한편, 동의의결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동의의결이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보다는 편리한 동의의결 절차로 도피하는 등 제도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규제기관이 공식적으로 위법행위를 확정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따라서 개인정보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제도 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64조의6에서는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동의의결의 이행력 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 동의의결 미이행 시 도입하고 있는 제재수단은 아래 표와 같음.

<해외 주요국의 동의의결 제도 및 미이행시 제재수단>

국가	도입여부	근거	미이행시 제재수단
미국	○	연방행정절차법	1일당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벌금(Civil penalty) 부과
일본	○	독점규제법 제65조	형벌(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
EU	○	Council Regulation 9조	1일당 전년도 1일 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서위반벌금 부과
한국	○	공정거래법 제51조의4	동의의결 미이행시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21-12 전자상거래 소비자법제 분석 연구, p.264)

□ 개정안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은 이미 법 위반 여부가 상당한 경우가 많아 위법성 판단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동의의결제도 운영 시의 방향,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에 법적 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사실상 강요하여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민·형사 절차와의 관계에서 중복 부담 및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집행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정보 분야는 피해 규모와 적정 보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제도 운영이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법적 불확실성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 기준과 파급효과 통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실효성이 확보된 이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자료】 동의의결제도 신청 및 처리 현황 (최종 인용 건은 음영 처리)

	신 청 인	위반 유형	신청일	의결일	결과
1	네이버(주)	공정거래법 위반	2013-11-20	2014-05-08	인용
2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2013-11-20	2014-05-08	인용
3	(주)다음 커뮤니케이션		2013-11-21	2014-05-08	인용
4	에스에이피코리아(주)	공정거래법 위반	2013-11-06	2014-12-04	인용
5	롯데쇼핑(주) (롯데시네마)	공정거래법 위반	2014-11-21	절차 개시 신청 기각	
6	CJ CGV(주), CJ ENM(주)		2014-11-21	절차 개시 신청 기각	
7	마이크로소프트	공정거래법 위반	2014-08-27	2015-08-24	인용
8	에스케이텔레콤(주)	표시광고법 위반	2015-10-20	2016-09-29	인용
9	(주)케이티		2015-10-29	2016-09-29	인용
10	(주)엘지유플러스		2015-10-27	2016-09-29	인용
11	퀄컴 lcn. 외 2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2016-11-18	절차 개시 신청 기각	
12	현대모비스(주)	공정거래법 위반	2017-05-24	절차 개시 신청 기각	
13	(주)엘에스 외 3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2018-04-24	절차 개시 신청 기각	
14	(주)골프존	공정거래법 위반	2018-08-13	절차 개시 신청 기각	
15	(주)엠티알	표시광고법 위반	2019-03-16	절차 개시 신청 기각	
16	남양유업(주)	공정거래법 위반	2019-02-28	2020-05-28	인용
17	애플코리아(유)	공정거래법 위반	2019-06-04	2021-03-16	인용
18	삼성전자(주) 외 4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2021-05-12	절차 개시 신청 기각	
19	(주)스타필드하남	공정거래법 위반	2022-04-08	2022-11-24	인용
20	브로드컴 Inc. 외 3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2022-07-13	2023-06-30	기각
21	(주)한솔	가맹사업법 위반	2022-09-29	2024-06-07	인용
22	(주)유진종합건설	하도급법 위반	2022-10-13	2024-03-29	인용
23	(주)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법 위반	2023-10-19	절차 개시 신청 기각	
24	(주)지에스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024-05-30	2025-04-18	인용
25	(주)비지예프리트레일		2024-05-30	2025-04-18	인용
26	(주)코리아세븐		2024-05-30	2025-04-18	인용
27	(주)이마트24		2024-05-30	2025-04-18	인용
28	(주)리만코리아	방문판매법 위반	2024-04-29	절차 개시 신청 기각	
29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하도급법 위반	2024-08-06	절차 개시 신청 기각	
30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하도급법 위반	2024-09-06	2025-06-09	인용
31	(주)하이프		2024-09-12	2025-06-09	인용
32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2024-09-27	2025-06-09	인용
33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2024-09-09	2025-06-09	인용
34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		2024-09-02	2025-06-09	인용
35	(주)카카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024-10-31	2025-07-15	인용
36	브로드컴 Inc. 외 3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2024-10-31	2025-09-01	인용
37	구글 엘엘씨 외 2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2025-04-20	2025-12-09	인용

	신 청 인	위반 유형	신청일	의결일	결과
38	(주)효성 및 효성중공업(주)	하도급법 위반	2025-03-18	2026-02-20	인용
39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하도급법 위반	2025-03-24	절차 개시 후 관련절차 진행 중	
40	서진산업(주)	하도급법 위반	2025-09-01	절차 개시 신청 기각	
41	로젠(주)	하도급법 위반	2026-02-12	절차 개시 신청 기각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문 의 처

02)6788-5108